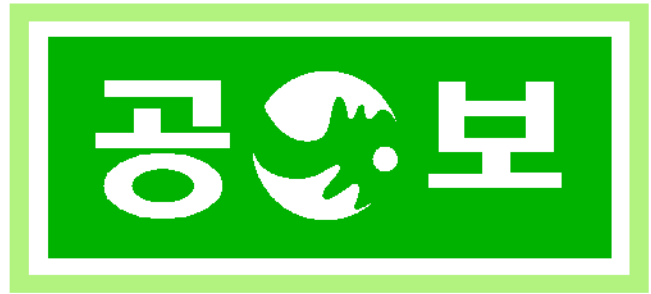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기 관 의 장	기 관 의 장



제 713 호 2011. 10. 17(월)

공 고
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628호[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] 2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632호[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] 4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634호[울산광역시 북구 구세감면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] 6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638호[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] 8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643호[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] 10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645호[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] 12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19-7207 행정7207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 - 628호

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0월 17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**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**

□ 개정이유

- 2011. 6. 7차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, 2011. 12. 8자로 시행됨에 따라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, “보육시설장”을 “어린이집원장”으로 “보육시설 종사자”를 “보육교직원”으로 법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,
- 안기 쉬운 법령 정비, 띄어쓰기, 중앙부처 명칭 등 맞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개정내용

- 보육시설 또는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
(서명, 안 제1조, 제4조, 제5조제2항제1호 및 별표 서명, 제1조, 제4조제2호, 제8조제1항, 제10조제1호)
- 보육시설장 또는 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명칭변경
(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제7조제2항, 제8조제4항)

- 보육시설종사자 또는 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변경
(인 제5조제2항제2호 및 별표 제4조제4호 및 별표 제7조제1항, 같은조제4항)
-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,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변경
(안 제9조)

□ 근거법규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

□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□ 의견제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. 10. 31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사회복지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교육주무관(전화 052-219-7345, FAX 052-219-7359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의 그 이유)
 -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기타 참고사항

□ 기타 참고사항

- 「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회복지과에서 예고기간 동안 공지합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1-632호

울산광역시 복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1 년 10월 17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울산광역시 복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제66조의3(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) 신설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안, 비용추계서 등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작성대상(안 제3조)
 - 작성대상 : 의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하의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
 - 지성세외 :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- 다. 제출범위(안 제4조)
 - 구청장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지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, 재원조달계획서 제출 명시
 - 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제출 명시
 - 주민청구조례안도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

- 라. 비용추계서 작성(안 제5조)
- 마. 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(안 제6조)
- 바. 삭성부서 및 제출시기(안 제7조)

3. 관련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(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기획홍보실, 전화:052-219-7204, FAX:052-219-721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 - 634 호

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
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0월 17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.12.31 종료됨에 따라, 「지방세특
례제한법」 개정(안) 중 조례 위임 규정을 반영하고, 기존 조례 중 필요한 감면
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(1) 감면조항 삭제(지방세특별제한법 신설로 이관)

- 1) 제4조(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) - 특별제한법 개정안 제38조제4항
- 2) 제2조(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) - 특별제한법 개정안 제17조의2
- 3) 제7조(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) - 특별제한법 개정안 제58조의2
- 4) 제6조(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) - 특별제한법 개정안 제85조의2
- 5) 제9조(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) - 특별제한법 개정안 제60조제2항
- 6) 제8조(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) - 특별제한법 개정안 제56조제3항
- 7) 제12조(벤처기업육성특진지구에 대한 감면) - 특별제한법 개정안 제58조제4항

(2) 상위법에서 조례 위임에 따른 개정

- 1) 제3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감면을 조정 : 안 제2조
 - ↳ 재산세 과세특례분 감면율 상향조정(50% →100%)

2) 제10조(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) 감면기간 조정 : 안 제4조

☞ 제①항과 제②항의 감면 및 공제기간 조정(기존 조례의 감면기간 적용)

(선액면제 : 7년, 50/100경감 : 3년)

☞ 제③항과 제④항의 감면 및 공제기간 조정(기존 조례의 감면기간 적용)

(50/100경감 : 7년, 30/100경감 : 3년)

(3) 기존 감면조례 기간연장

1) 제5조(분화제에 대한 감면) : 안 제3조

2) 제13조(농공단지 대제업주자에 대한 감면) : 안 제5조

3) 제14조(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) : 안 제6조

(4) 조례 폐지(일몰기간 종료)

1) 제11조(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) - 일몰기간 종료로 폐지

2) 제15조(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) - 일몰기간 종료로 폐지

(5) 조례 신설(지방세특별례제한법 개정)

1)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: 안 제7조

☞ 자동계좌이체납부 : 고지시 1매당 150원

☞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납부 : 고지시 1매당 500원

(6) 적용시한 : 2013년 12월 31일까지

3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세무과장)에게 (전화 052-219-7263, 팩스 052-219-7279)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승인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4. 기 타

울산광역시 북구 구청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인의 질문은 우리군 세무과에 비치 및 북구 홈페이지(<http://www.bukku.ulsan.kr>)에 게시하고, 예고기간 동안 공지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1-638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
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**

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
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0 월 17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1. 제정이유

「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」가
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전검사의 우선검사 대상(안 제2조)
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제16조의2(장애인에
대한 편의제공)에서 규정한 편의제공 대상시설에 국한함.

1. 동 주민센터, 경찰서, 파출소, 소방파출소, 우체국, 전신전화국,
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, 보건소, 공공도서관
2. 도매시장, 소매시장, 상점등 동일 건축물내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
합계가 1,000㎡이상인 시설
3.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, 동·식문원

- 4. 의료시설 중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1,000㎡이상인 시설
- 5.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, 도서관
- 6. 노유자시설 중 장애위복시설
- 7.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
3. 의견 제출

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사회복지과장, 전화 052-219-7344, 팩스 052-219-7359, 메일buk2006@korea.kr)에게 서민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4. 참고사항

제정 규칙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들로 올려놓겠습니다.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 - 643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0월 17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□ 개정목적

- 한국수력원자력(주)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시행하는 월성원전단지 공업용수 공급관로 데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, 제1기입상 부지 내 위치하고 있는 연압동과 효둔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
- 정자항 제방시설의 경우 지리적 위치 상 정자동에 비해 구유동에 근접하고, 해당 시설 일부가 구유동 판지이촌계 이장구역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정자동 면시가 부여되어 주민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
 - ※ 해당 시설 사업시행자인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정자동 및 구유동 주민 의견 수렴 후 행정구역 변경 신청

□ 주요개정내용

- 개정연혁 조항 신설(안 제3조)
- 개정연혁표 별표 2 신설
 - 개정연혁 【붙임】 지번별 소서 참조

□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

□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□ 의견제출

- 「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. 11. 07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주민참여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참여과 자치행정주무관(전화 052-219-7653, FAX 052-219-7659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□ 기타

- 「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참여과에 비치되어 예고기간 동안 공시 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-645호

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0월 17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

□ 제 정 이 유

-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3조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, 책으로 소농하는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및 책 읽는 울산 북구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□ 주 요 내 용

-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)
- 책 읽는 울산 북구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)
- 독서문화 진흥 유공자 및 독서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□ 의 견 제 출

○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**2011년 11월 7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도서관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 1길 9)에게 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과 도서관정책담당(전화 052-219-7577, 팩스 052-219-785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□ 기 타 사 항

○ 세정인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.